

투 자 설 명 서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2. 자산운용회사명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3층
대표전화 : 3774-0600
3. 판매회사명 및
상당 가능 전화번호 :

광주은행	TEL : 1588-3388
대구은행	TEL : 053-756-2001
키움증권	TEL : 1544-9000
하나은행	TEL : 1588-1111
한국투자증권	TEL : 1544-500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06.30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게시 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

목 차

[핵심투자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의 보수 및 수수료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재간접 투자신탁, 추가형
4. 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혼합형 및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 추구.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다양한 간접 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 특히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에 40% 이상을 투자.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데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헤지(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헤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를 실시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7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음. 전세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며 환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김동일(CIO), 백상훈(차장)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6월 30일 기준)

기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007-07-01 ~ 2008-06-30	2006-07-01 ~ 2008-06-30	2005-12-05 ~ 2008-06-30
투자신탁	-12.47	1.88	3.06
비교지수	-0.64	7.87	8.47

*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Lehman Total Return Bond Index(30%)+KBP_Call(10%)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	매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시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009%	사유 발생시 지출
	총보수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489%	-
	총보수 비용비율 (피투자펀드보수포함)	순자산총액의 연 2.149%	-

1) 기타비용은 선물옵션,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 이 재간접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외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도 보수/수수료가 징구되므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총 보수/수수료는 2008년 5월 30일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볼 때 연2.149%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상보수 연2.149%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세한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본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법시행일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국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은 국내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 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중 매입·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재간접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5. 최초설정일: 2005년 12월 5일
6. 수탁고 추이:

(2008년 6월 30일 기준, 단위/억원)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 6개월전	2년전	2년 6개월전
	2008-06-30	2007-12-30	2007-06-30	2006-12-30	2006-06-30	2005-12-30
수탁고금액	147.31	230.34	470.61	580.25	612.89	89.75
수탁고증가율	-36.05	-51.06	-18.89	-5.33	582.87	0.00

7. 해지사유:

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나. 가의 (3)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 가의 (2)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약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혼합형 및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등(이머징 마켓의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동일)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이머징 마켓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은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펀드의 운용 규모, 과거의 운용 성과, 투자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데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헤지(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헤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비중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입 당시의 거시 경제 환경, 금융 시장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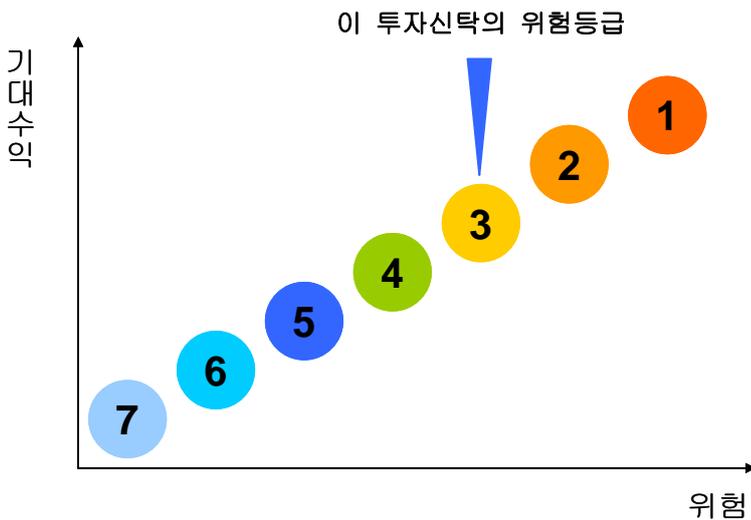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재산을 외국간접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위험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전세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으로서 **7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 1등급: 매우높음
- 2등급: 높음
- 3등급: 비교적 높음
- 4등급: 중간
- 5등급: 비교적 낮음
- 6등급: 낮음
- 7등급: 매우낮음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6.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동일	CIO	- 삼성생명(1987-1996) - 삼성투자운용(1996-1999) - KTB자산운용(1999-2000) -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 (2001-현재)
백상훈	차장	- 당사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 당사 채권운용팀(2000-현재)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으로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07-07-01 ~ 2008-06-30	2006-07-01 ~ 2008-06-30	2005-12-05 ~ 2008-06-30
투자신탁	-12.47	1.88	3.06
비교지수	-0.64	7.87	8.47

*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Lehman Total Return Bond Index(30%)+KBP_Call(1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	-----	-----	-----

	2007-07-01 ~ 2008-06-30	2006-07-01 ~ 2007-06-30	2005-12-05 ~ 2006-06-30
투자신탁	-12.47	18.59	7.16
비교지수	-0.64	17.11	10.32

*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Lehman Total Return Bond Index(30%)+KBP_Call(10%)

* 3년차 수익률 측정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환산 수익률임.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사유 발생시 지출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09%	
총보수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489%	-
총보수 비용비율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	순자산총액의 연 2.149%	-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동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 이 재간접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외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도 보수/수수료가 징구되므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총 보수/수수료는 2008년 5월 30일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볼 때 연2.149%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상보수 연2.149%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기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아래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기타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총 보수·비용	158,855	500,791	877,776	1,998,065
총 보수·비용 (피투자펀드보수포함)	235,505	742,431	1,301,316	2,962,162

3.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의 보수 및 수수료

- (1) 이 재간접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외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서도 보수/수수료가 징구됩니다.
- (2) 2008년 6월 30일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의 예상 보수/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총 보수/수수료는 연 2.149% 정도로 예상됩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펀드명	가중치	예상 보수
템플턴 글로벌 펀드	18.38%	연 0.70%
템플턴 글로벌 본드 펀드	6.85%	연 0.55%
프랭클린 유추얼 비이컨 펀드	17.68%	연 0.70%
템플턴 글로벌 스몰러 컴파니즈 펀드	5.98%	연 0.70%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	15.40%	연 1.10%
템플턴 글로벌 토탈 리턴 펀드	9.47%	연 0.55%
프랭클린 유추얼 글로벌 디스커버리 펀드	7.51%	연 0.70%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 펀드	6.95%	연 0.70%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펀드	1.25%	연 0.60%
유동성	10.53%	연 0.00%
투자대상펀드 포트폴리오 예상 보수/수수료	100%	연 0.66%

※ 예상보수에 투자대상 간접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이익분배금이 세제상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하여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 투자에서 얻게 되는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법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외상장주식(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의 매매·평가손익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Mutual Fund, REITs, ETF 등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주식(외국 펀드 포함)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 재간접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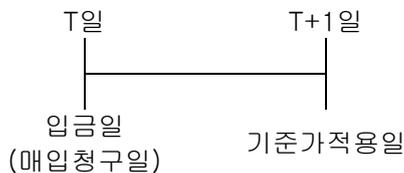
1. 매입

가.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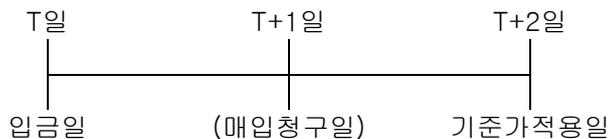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취득은 판매회사 본·지점의 창구에서 매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나.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1)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3)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라. 결제방법 : 수익증권의 매입은 현금 및 수표로만 가능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의 판매시간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이내로 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등의 분배

가. 이익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나.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1)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 제45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등

1. 투자전략

가. 기본 방침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이머징 마켓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은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펀드의 운용 규모, 과거의 운용 성과, 투자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데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헤지(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헤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비중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입 당시의 거시 경제 환경, 금융 시장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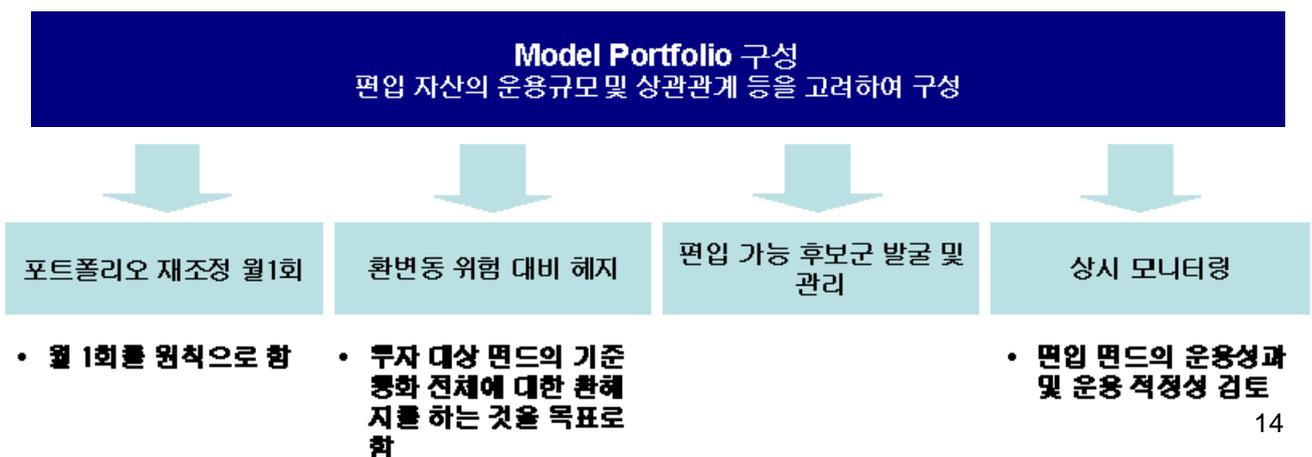
(1) 펀드 특징

- ① 글로벌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 추구
- ② 글로벌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의 안정성 도모
- ③ 프랭클린템플턴 그룹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due diligence 기능 강화
- ④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 최소화를 추구
- ⑤ 신탁재산의 일부를 국내 국공채, 우량 회사채 및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제고

(2) 펀드 구성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주식형 및 이머징 마켓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 (신탁재산의 40% 이상 투자)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 이득에 채권 투자를 통한 이자 수입 확보
채권형 간접투자증권	글로벌 채권 투자를 통해 총 투자 수익(이자 수입, 자본 이득, 외환 차익) 극대화
국내 유동성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3) 투자 프로세스



(4) 자산 배분 전략

- ① 신탁재산의 40% 이상을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주식 편입비중이 신탁재산의 5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② 주식 편입비를 높여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 이득 획득을 추구합니다.
- ③ 벤치마크 : MSCI all country world free index 60% + Lehman global aggregated total return bond index 30% + KBP call index 10%

(5) 모델 포트폴리오

종류	Fund	기준통화
주식형	템플턴 글로벌 펀드	미달러
	템플턴 글로벌 스몰러 컴파니즈 펀드	미달러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	미달러
	프랭클린 유추얼 비이컨 펀드	미달러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 펀드	일본엔
	프랭클린 유추얼 글로벌 디스커버리 펀드	미달러
혼합형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펀드	미달러
채권형	템플턴 글로벌 본드 펀드	미달러
	템플턴 글로벌 토탈 리턴 펀드	미달러

(6) 환위험 관리

- ①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회피할 것이며(목표 환헤지 비율은 100%) 선물환/통화선물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징할 예정입니다.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추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 ②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헤징 거래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 편입 펀드 및 자산운용사

① 템플턴 글로벌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Edinburgh, UK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1년 2월 28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1849.76백만불
투자 목적	전 세계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저평가된 우량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증식 추구.

② 템플턴 글로벌 본드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Advisers, Inc., USA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1년 2월28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10698.51백만불
투자 목적	전세계 여러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과 통화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자본증식, 화폐가치 상승 이익의 극대화 추구

③ 프랭클린 유추얼 비이컨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Mutual Advisers, LLC, USA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Edinburgh, UK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7년 7월7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2470.88백만불
투자 목적	미국과 미국외의 기업들에서 발행된 보통주, 우선주, 채권 등에 투자하며, 자산증식을 추구. 투자제한 조건내에서,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여 적극적인 자산증식 추구.

④ 템플턴 글로벌 스몰러 컴파니즈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Corp., Canada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1년 7월 8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205.81백만불
투자 목적	전세계 중소형 기업이 발행한 우량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증식 추구

⑤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

운용회사	Templeton Asset Management Limited, Singapore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1년 2월 28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1616.81백만불
투자 목적	신흥시장의 저평가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고 부수적으로 신흥시장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증식 추구

⑥ 템플턴 글로벌 토탈 리턴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Advisers, Inc, USA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2003년 8월29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3681.32백만불
투자 목적	전세계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우량채권 및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최대화 추구

⑦ 프랭클린 뮤추얼 글로벌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Mutual Advisers, LLC, USA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Edinburgh, UK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2000년 10월 25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622.52백만불
투자 목적	전세계 소재한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 추구

⑧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 펀드

운용회사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Japan Limited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2000년 9월 1일 / 2008년 5월말 기준 약 31250.47백만엔
투자 목적	일본에서 설립되거나 기반을 둔 기업이 발행한 저평가된 우량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 추구

⑨ 템플턴 글로벌 밸런스드 펀드

운용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UK (FTIML) (펀드주식 부분) ● Franklin Advisers, Inc. (FAI) (펀드자산의 채권부분)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	1994년 6월1일 / 2008년 5월말 기준 미화 약 1084.05백만불
투자 목적	전세계 국가 혹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채권 이자소득 및 주식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 추구.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구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외국간접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이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아시아, 러시아 또는 남아메리카 등 특정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국간접투자증권에서 투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환매 위험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1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외국간접투자증권은 소재국의 법률이 국내 공모형 펀드의 기준과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제한 및 기법, 보고서, 운용 방식도 국내 기준과 틀릴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해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동 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등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탁자산은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간접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2조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
2.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40% 이상	해당 국가의 간접투자기구 분류 기준에 따름
3. 국내 채권 및 해외 채권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채권 :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채권을 제외) •해외 채권 :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법 제 2 조 제 7 호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채권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6.	금리스왑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7.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8.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기준 신탁재산의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
9.	환매조건부채권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10.	지수관련 장외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 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투자증권 및 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시행령 제10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거래
11.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거래	
12.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3.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14.	기타 사항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4,5,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투자대상 세부설명 및 투자한도,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간접투자 증권에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자산운용회사[법 제 15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발행·창설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합니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법 제 137 조에 따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총발행 간접투자증권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시행령 제 58 조 제 4 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도록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본문 적용)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합니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후순위채	이 투자신탁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채권이란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 약관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합니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합니다.
비상장채권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합니다.
장내파생상품	법 제2조 8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장외파생상품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합니다.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

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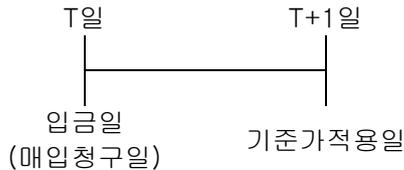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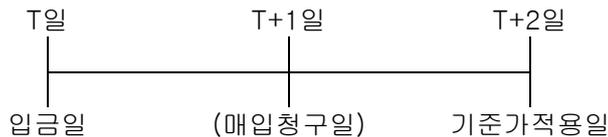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환매관련유의사항

가.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8영업일 전일(17시 이후 환매청구한 경우 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환매연기의 사유 및 절차

- (1)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2) (1)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①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③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6)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①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②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1), (5) 및 (6)에 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2) 위 (1)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위(2)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위(3)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부분 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상환금등의 지급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 (1)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3층 ☎ (02) 3774-0600
회 사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3월: 쌍용투자자문회사 설립 - 1997년 2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과의 합자로 쌍용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7년 2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1999년 3월: 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0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이 회사지분전부인수로 100% 외국계 투신운용사가 됨 - 2000년 9월: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 주요업무

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나. 업무의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중 기준가격산정업무를 SC제일펀그 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며 위탁의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다. 의무 및 책임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7.3.31	항목	2006.3.31	2007.3.31
유동자산	36,063	40,388	영업수익	15,833	19,193
고정자산	4,513	3,811	영업비용	11,315	15,057
자산총계	40,575	44,199	영업이익	4,518	4,136
유동부채	3,551	4,068	영업외수익	213	298
고정부채	-	-	영업외비용	78	32
부채총계	3,551	4,068	경상이익	4,654	4,402

자본금	15,000	1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2,025	25,131	특별손실	-	-
자본총계	37,025	44,199	당기순이익	3,328	3,107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6월 30일 기준, 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17,512.04	1,410.40	3,977.35	0.77				1,180		24,081

*투자일임재산을 제외합니다.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8년 4월 30일 기준, 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 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생	CIO	107	27,915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 (2001-현재)	팀공동운용
백상훈	1972년생	차장	107	27,915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현재)	팀공동운용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투자일임자산을 포함합니다.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운용팀과 채권운용팀에서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자료의 운용현황은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전화번호 : 1588-3388)	www.kjbank.com 참조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전화번호: 051-740-6340)	www.daegubank.co.kr 참조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 빌딩 14층 (전화번호: 1544-9000)	www.kiwoom.com 참조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전화번호:1588-1111)	www.hanabank.com 참조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전화번호:1544-5000)	www.truefriend.com 참조

2. 주요업무

- 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 나.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업무
- 다. 간접투자증권의 교부 업무
-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업무
- 마.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 바. 대고객 상담 및 약관, 투자설명서 교부 등 부수업무 및 그 외 판매행위준칙 등에 해당하는 내용

(판매행위준칙 등)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6)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의무 및 책임

- 가.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연혁(설립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1588-1770	서울시 중구 봉래동 1-25	http://kr.hsbc.com 참조

2. 주요업무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해당사항없음

4. 의무 및 책임

- 가.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SC제일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 굿모닝 타워 19층 (대표전화 02-3770-4450)
회사연혁	1999년 11월 3일 설립 2000년 1월 2일 등록

2. 주요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4. 의무 및 책임

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대표전화 3215-1400)
회사연혁	2000년 6월 20일 설립 2000년 6월 29일 등록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399-3350)
회사연혁	2000년 5월 29일 설립 2000년 7월 1일 등록

2. 주요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 이를 간접투자자기구에게 제공

VI.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 총회의 소집절차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3) (2)의 사항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4)의 사항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6)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자 총회의 운영

- (1)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외에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라.의 (1)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라.의 (2)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의결권등

- (1)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5) 자산운용회사는 나.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바. 수익자총회의 연기

-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2) 바.의 (1)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아래 (3)의 사항들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위의 (1)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아. 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74조에 따른다.

자. 수익자명부 관리방법

-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투자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3)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증권예탁결제원은 (4)의 사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②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2. 잔여재산분배

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 상환금등 ”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가.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증권매매거래내역서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

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상품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가. 정기공시

- (1) 경영에 관한 보고: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경영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신탁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및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신탁약관을 비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신탁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 (4) 운용실적의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영업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기준가격계산서
 - ④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3)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4)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회사보고서

-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가.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1)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2)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 (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④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⑤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⑦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의결권 행사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프랭클린 템플턴 글로벌 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 판 매 일 : _____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 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환율변동 위험을 포함한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